원자력안전의 경제학적 의미와 비용편익분석

Economic Consideration of Nuclear Safety and Cost Benefit Analysis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최영성, 최광식, 최경우, 송인진, 박동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

요 약

원자력안전규제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인 접근방법 외에 안전규제의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의 경제학적 의미, 즉 공적 안전재화로서의 원자력안전의 속성과 그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사적 안전재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정책변화에 의한 사회전체의 후생변화가 각 개인의 보상변화량의 합으로 계산됨을 보이고 신규 원자력안전규제요건 부과의 합리화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역사를 고찰한 후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

Improvement of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System

김상원, 오병주, 유선오, 강석철,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원자력사고는 그 확률은 낮지만 피해의 광역성, 대규모성,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등 고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각국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여 엄격책임, 책임의 사업자집중, 강제적 배상조치, 국가의 개입 등을 내용으로 담아 피해자의 구제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원자력손해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동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손해배상법을 개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구축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사업자의 책임 제한액과 배상조치액을 공히 3억SDR 수준으로 하고, 손해의 개념을 확장하며, 적용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고, 면책사유를 축소하며 인적손해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